참고 **규제 샌드박스 제도 개요**

1. 제도 구성

□ **(개념)** 기존 규제 불구, **신기술**을 활용한 **새로운 제품·서비스**의 **시도**가 가능토록 **일정조건 하**(시간·장소·규모)에서 **규제를 면제·유예**시켜 주는 **혁신의 실험장**

□ **(주요내용) 국민의 생명·안전 등 공익적 가치**를 균형있게 고려하는 가운데, **신기술·신산업 육성**을 위한 **혁신적인 규제특례 제도** 도입

① 규제특례 3종 세트 : **규제 신속확인❶, 임시허가❷, 실증특례❸** 도입

❶ 규제 존재 여부.내용 문의 → 30일 이내 미회신시 '규제없음' 간주
❷ 법령 모호·불합리 시 → 기존 규제 적용 없이 조기 출시
❸ 법령 모호·불합리.금지 시 → 기존 규제 적용 없이 테스트 허용

※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 기업에 실증비용 및 보험료 지원 병행

< 규제 샌드박스 운영 절차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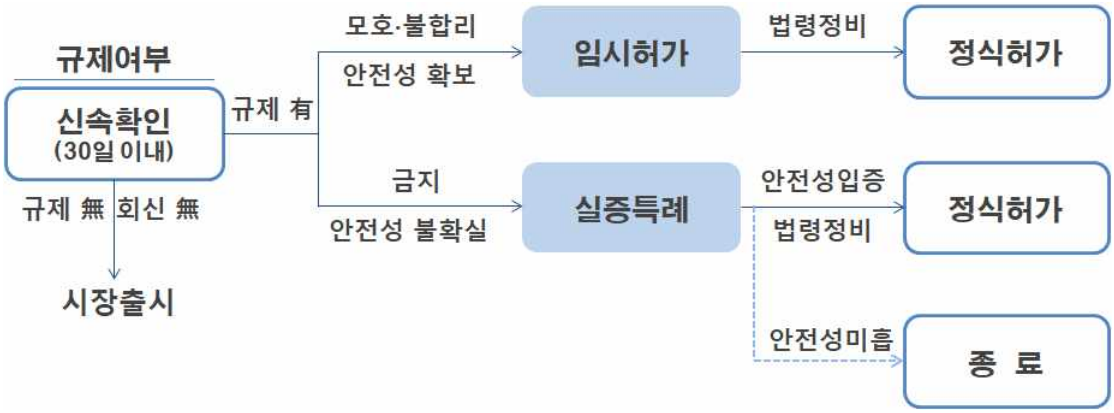

② 안전 3종 세트 : **생명·안전 검토❶, 문제 즉시대응❷, 배상책임 강화❸**

❶ 국민의 생명.안전.환경 우려 시 규제특례 제한
❷ 규제특례 적용 중 문제 발생.예상 시 특례 취소
❸ 사전 책임보험 가입, 고의.과실 입증책임 전환(피해자 → 사업자)

2. 법적근거 및 추진체계

□ (법적 근거) 행정규제기본법 + 개별 4법에 근거해 운영

○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기본법으로서 **행정규제기본법 개정**(19.7.17 시행)

- **선허용·후규제** 체계로의 패러다임 전환 제시

○ ICT융합, 산업융합, 혁신금융, 지역혁신 4대 분야별 법령 제·개정

*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(19.1.17 시행)
* 산업융합촉진법(19.1.17 시행)
*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(19.4.17 시행)
* 금융혁신지원 특별법(19.4.1 시행)

□ (추진 체계) 국무조정실 중심 4개 부처 협업체계로 운영

○ **(국무조정실)** 규제 샌드박스 **제도 총괄** 및 **관계부처 TF*** 운영

* 국무조정실장 주재「관계차관회의」, 규제조정실장 주재「관계부처 실무 TF」

○ **(제도 주관부처) 분야별 4개 부처**가 **규제 샌드박스 운영*** 및 규제 소관부처와 공동으로 **사후관리·평가** 추진

* 상담·안내·컨설팅, 부처 협의 및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운영, 기타 정책지원 등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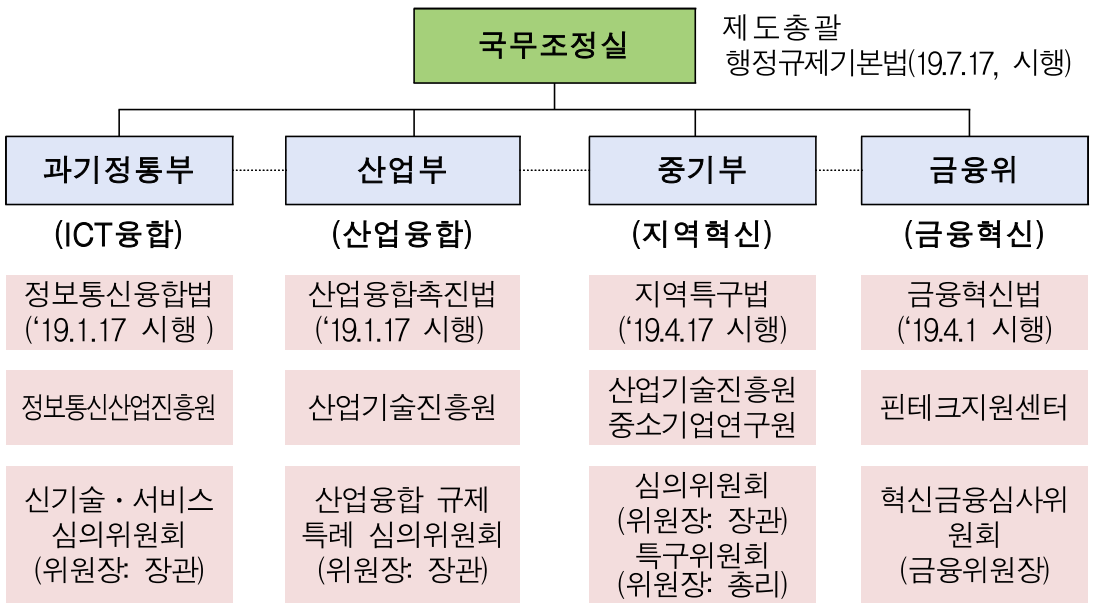
< 규제 샌드박스 운영 체계 >